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지방재발행안심사보고

심사결과

1. 심사일정

-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 나. 회부일자 : 94. 11. 22
- 다. 상정일자 : 94. 12. 22
- 라. 의결일자 : 94. 12.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설 명 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나. 내 용

— 165만평 택지개발 면적 중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55만 1천평의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6500억원으로써 94년 10월말 현재 총 기체 1917억원과 택지분양대금 3619억원 등 총 55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에 5286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입한 사모공채(연리 11.5%) 등 고리의 차입금으로 인한 과중한 금융비용을 경감코자 95년도에 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연리 8%)을 차입하여 악성부채를 상환코자 함.

3. 질의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각의 구체적인 계획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자료를 통하여 홍보와 체계적인 매각계획으로 금년에 많은 양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명년도에도 전직원 세일즈벤화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차입한 기체는 악성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리 8%의 기체를 차입하여 연리 11.5%의 악성부채를 상환코자 함.

4. 찬반토론 : 없 음

5. 소수의견 : 없 음

심사결과 : 원안의결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마무리를위한지방채발행안

의안번호	316
의 결 년 월 일	94. 12. 29 (제33회)

제출년월일 : 1994. 11. 21

제출자 : 부천시장

1. 지방채 발행현황

사업명	승인 신청액 (억원)	차입선	차입종류	이율(%)	상환방법	상환제원	차입시기	비고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300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연리 8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공영개발 용지매각 수입	95.3월 중	

2. 제안사유

- 165만평 택지개발 면적 중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55만 1천평의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6500억원으로써 94년 10월 말 현재 총 기채 1917억원과 택지분양대금 3619억원 등 총 55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에 5286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입한 사모공채(연리 11.5%) 등 고리의 차입금으로 인한 과중한 금융비용을 경감코자 95년도에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연리 8%)을 차입하여 악성부채를 상환코자 함.

3. 상환대책

- 중동신도시 도시기반시설이 완공되고 서울, 인천, 김포, 시흥과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각종 도로가 완공을 서두르고 있고
- 시청, 시의회,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관공서가 입주 내지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70% 이상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여건이 성숙되고

- 금년에 베화점, 종합병원 등 상업용지 26여 필지 등이 매각되어 859억원의 매각실적을 올린 바 있고
- 앞으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용지매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이 세일즈맨화하여 매각에 앞장서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대금을 대불면제하며 대금납부도 상환기간을 1~5년에서 3~5년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나, 시청과 (주)L.G 베화점이 착공됨으로 95년 중에는 인근 주변 상업용지 매각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 예상됨.

94.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진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을 감시·통제함에 있어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사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
-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94. 11. 28 ~ 94. 12. 4(7일간)

□ 감사대상기관